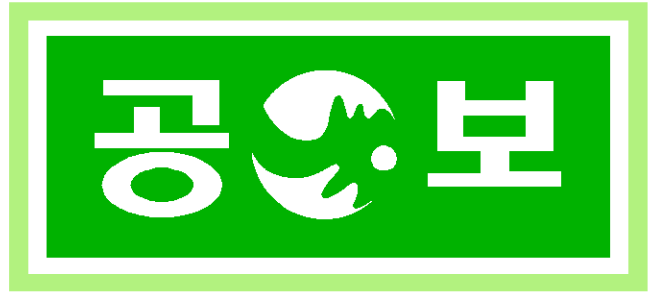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구 람	기 관 의 장



제 703 호 2011. 8. 8(월)

공 고
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501호[소하천공사시행(소하천 점용·사용)허가공고] 2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506호[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] 3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기획홍보실(☎219-7207 행정7207)

공고 제2011-501호

소하천공사시행(소하천 점용·사용)허가공고

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7조제4항(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)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시행(소하천 점용·사용)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08월 08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

시행 (점용·사용) 자	상호 및 명칭	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단		
	대표자	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단장	주소	부산광역시 시구 보수로 29
소하천명		돌논천		
공사(점용·사용)개요	위치	매곡동 370-1, 370-2, 370-3, 371-1, 373-5번지		
	면적	830.65㎡	폐천부지에상면적	㎡
	기간	일시 : 2011. 08. 02. ~ 2012. 05. 27. 5년 : 2011. 05. 28. ~ 2015. 12. 31		
목적 및 사유		공작물 설치(전기공급시설 전력구)		
열람서류 : 설계도시 1부				

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1 - 506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8월 8일

울산광역시북구청장

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
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2011년 6월 30일자로 일부개정됨에 따라,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「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를 “500미터 이내”에서 1킬로미터 이내”로 확대(안 제14조1항)
- 나.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을 “2013년 11월 23일”에서 “2015년 11월 23일”로 2년 연장(안 부칙 제2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 경제일자리과장)에게 전화·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☎ 219-7462, FAX 219-7469)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4. 기타

「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